

과태료 부과기준(제4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다.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원천공제 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, 제25조(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) 및 제26조(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)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1호	과소·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		
나. 채무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2호	과소·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		
다.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3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

라.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	법 제44조 제1항제3호	100만원	300만원	500만원
마. 채무자가 법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44조 제2항	5만원	20만원	50만원
바. 채무자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44조 제3항	5만원	20만원	50만원

비고

1. 교육부장관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를 계산할 때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.
2. 교육부장관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가 2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.
3.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은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.